

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발코니 추락방지 안내문

제 목 :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「발코니형 비상구」 안전관리 강화 협조

1. 귀 영업장의 안전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최근 발코니형 비상구의 구조적 문제(부식, 노후화 등)로 인명사고*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. 발코니 비상구 설치(2006년)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식 등 노후화로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및 보완을 하여야 합니다.
* 경기도 시흥시 일반음식점에서 비상구 발코니 난간 파손으로 인한 추락사고로 1명 사망, 2명 부상('21. 3. 29)
다중이용업소 폐업 후 건물 외벽에 방치된 비상구 발코니에서 건물 관계인이 사용 중에 발코니가 붕괴되어 추락사고 발생('20.8.6. / 2명 중상, 울산 남구)
3.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는 매 분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. 정기점검을 할 때 발코니형 비상구의 노후상태, 난간·지지대 안전 여부, 용접 및 부식상태를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.

2021. 7월

양 평 소 방 서 장